

오산시설계심사위원회규정

제정 1989년 1월 1일 훈령 제36호

제1조(설치)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시장이 행하는 시설공사에 관한 설계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오산시설계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계 및 설계변경의 심사와 설계심사의 일반적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 중앙 및 도설계심사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한다.

1.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시설공사
2. 설계변경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, 도시과장 공사설계 사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심사요청) ①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시설공사의 설계를 할 때에는 그 설계의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심사기간등) 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된 설계서에 대한 심의와 그 결과를 부의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사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3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7조(심사의 효력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요청된 설계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.

오산시설계심사위원회규정

제8조(자료요청 및 조서) 위원회는 설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행할 수 있다.

제9조(간사등)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시의 설계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임명한다.

③ 간사는 관계 자료를 취합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0조(회의록)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참석인원, 심의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,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